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70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0호 중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를 "제62조제3호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7조 본문 중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를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5조제10호, 제95조의2 및 제97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95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10. 제62조제3호를
<u>규정을</u>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5조의2(벌칙) 제62조제2호를 위
	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u>벌금에 처한다.</u>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제97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93조부터</u>	제93조부터
<u>제96조까지</u> 및 제96조의2의 어	제95조까지, 제95조의2, 제96조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	
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